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5414 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학원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가. 원고는 2006. 11. 8. [redacted]학교(현재 '[redacted]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redacted]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6. 11. 20.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477억 1,800만 원 상당의 토지 17필지와 교사 2동, 주택 11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130억 2,700만 원 상당의 토지 1필지와 예금, 보통재산으로 89억 1,0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교구 등 총 696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9. A으로부터 [redacted] [redacted]구 B 임야 22,522㎡와 C 임야 7,518㎡(이하 두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이러한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인 2010. 9.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학교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100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적용하는 등록세 중과세율 1,0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6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 2,060만 원 합계 7억 2,360만 원을 신고하고, 2013. 10. 15. 피고에게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중과세 금액인 4억 8,240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

1) 원고는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학교법인인데,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가 운영하던 [redacted]학교의 자산, 부채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임직원과 학생들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새로운 설립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중과의 전제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2) 등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redacted]학교를 분리한 데 불과한 원고의 설립으로 대도시 내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아니하였고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위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원고 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구 지방세법 제131조에 규정한 일반 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설립의 근거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없는 한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06. 11. 8.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사무소는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있고, 원고의 설립 당시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의 당시 주사무소는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있어서 원고의 설립으로 주사무소가 새로 설치된 점, ② 구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신설되면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원고의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8인과 감사 2인을 임원으로 두므로, 원고의 설립으로 인하여 새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redacted]학교에 관련된 인적 조직을 승계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의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과 별개로 개인인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이는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나 법인이 조직의 형태만을 변경하면서 기존 재산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 등과는 달리 대도시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4)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에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법인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설립이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의 비과세요건인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6항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원고 학교법인의 설립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분할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리사단법인(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학교법인 외에 다른 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분할되는 경우를 등록세 중과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④ 영리사단법인의 분할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그러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설립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전제로 하여 신고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제12조(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1

제36조(합병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끝.